

# 광주 복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43호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2차
자진신고 5.1.~6.30. 집중단속 7.1.~7.31.	자진신고 9.1.~10.31. 집중단속 11.1.~11.30.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이종목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안전합니다**

- 동물병원 방문
- 내장형 시술(주사)
-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 완료
-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DLE

- 등록동물종이 바뀌는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줄이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30일 DLE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정부 관련부서(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포스터

/광주 복구청 제공

## 이달 말까지 1차·9월부터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독려...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 활성화와 체계적인 동물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상·하반기 총 2차례 실시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전부 해당되며 고양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주 정보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복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변경신고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 원의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복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과 11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호와 반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과 사람·동물이 함께 행복한 복구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복구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과 협력해 등록 절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등록된 반려견은 분실 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반환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 신고의 중요성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 광산구, 노동권의 보호망 강화...법률상담소 운영

## 예약제 상시 운영...무료 법률상담 지원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광주 광산구가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노동자 법률상담소'는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상담소를 운영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던 광산구는 올해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동자 법률상담소'는 이달부터 예약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일일 최대 4시간)한다.

광산구는 지역 노동 인권 단체인 '광주민중의집(광산구 사암로340번 안길 6-5, 601호)'과 협력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적 지원에 나선다.

법률 상담, 법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나 전화로 예약하면 필요한 상담받을 수 있다.(신청 및 문의 광주민중의집 062-952-1299, 광

산구 일자리정책과 광산구는 노동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이 원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병행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산구는 '노동자 법률상담소'가 노동자들의 법적 고충 해소를 돕고, 고용 관행 개선과 건강한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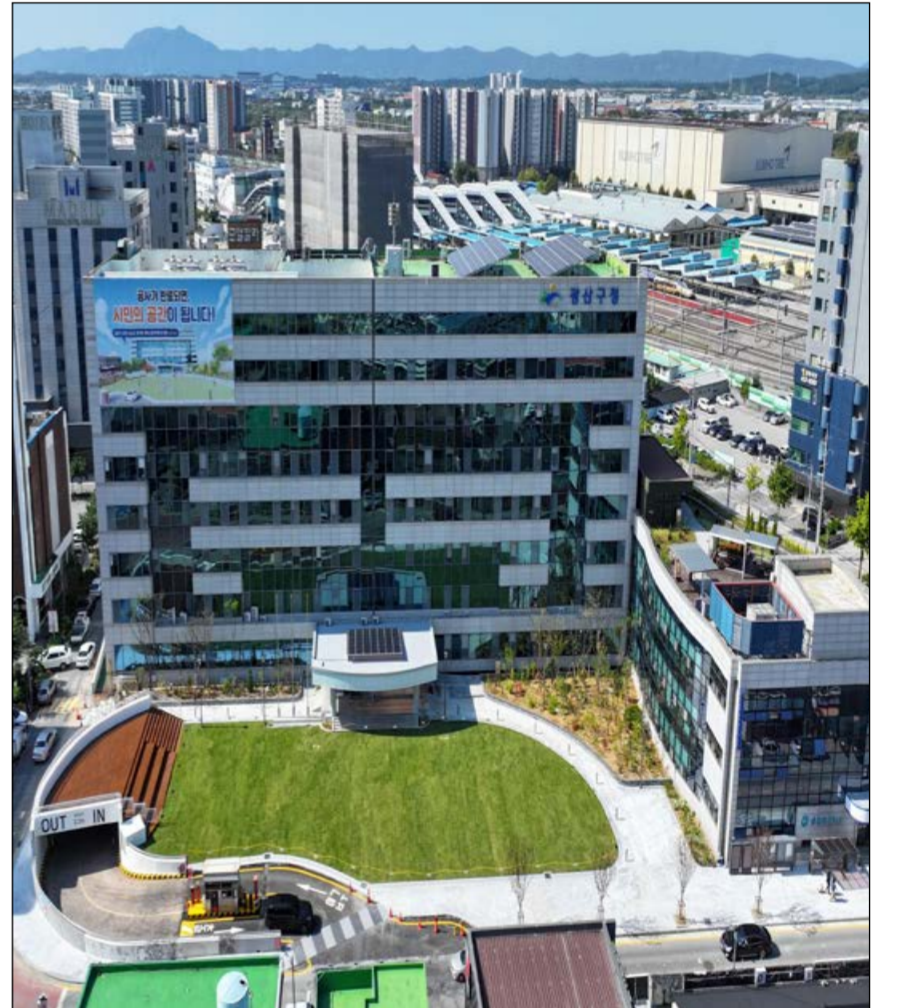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 경제적 부담으로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창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근로계약 등 노동 전반에 관한 법률 문제를 다룬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 안내와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노동자의 권익 보장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한 고용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역 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노동자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서기만 기자



광주 광산구청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